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679호 2020. 12. 8.(화)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91호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1
남해군 조례 제2492호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4
남해군 조례 제2493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
남해군 조례 제2494호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
남해군 조례 제2495호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12
남해군 조례 제249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남해군 조례 제249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남해군 조례 제2498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남해군 조례 제2499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남해군 조례 제2500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7
남해군 조례 제2501호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30
남해군 조례 제2502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35
남해군 조례 제2503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남해군 조례 제2504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42
남해군 조례 제2505호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44
남해군 조례 제2506호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8
남해군 조례 제2507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53
남해군 조례 제2508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남해군 조례 제2509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61

회 랑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860-3045, 행정 3045)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82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64
남해군 규칙 제1183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2
남해군 규칙 제1184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6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3호 남해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88
--------------------------------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205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94
남해군 고시 제2020-210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97
남해군 고시 제2020-21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변경고시	99
남해군 고시 제2020-2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변경)	108
남해군 고시 제2020-2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09
남해군 고시 제2020-216호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이순신순국공원)	110
남해군 고시 제2020-217호 남해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2 및 소로3-56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13
남해군 고시 제2020-21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115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1412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24
남해군 공고 제2020-141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43
남해군 공고 제2020-142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44
남해군 공고 제2020-142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45
남해군 공고 제2020-1441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146
남해군 공고 제2020-1459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7
남해군 공고 제2020-1460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0
남해군 공고 제2020-1461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3
남해군 공고 제2020-146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56
남해군 공고 제2020-146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158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491호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남해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모사업의 내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적법성
2. 사업의 타당성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4.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군비 확보 가능성
5. 사업효과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 보고)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신청 전에 남해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 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

② 군수는 제4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군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부서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2호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해군민의 건강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용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읍·면
 - 나. 남해군의회
 -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남해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남해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 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 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남해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 목적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3호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0일” 을 “110일”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45일” 을 “50일”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1월 25일” 을 “11월 20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4호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남해군의회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해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의원의 의회활동에 수반되는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개발
3. 안전심의회와 관련한 중요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위·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 각 상임위원회(이하"상임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지방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의정자문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의장은 위원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위원 수를 상임위원회별로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이 소집요구를 할 때에는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등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변상)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이 남해군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5호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읍·면의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3조(「남해군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읍·면의 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로 한다.

제4조(「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의”로 한다.

제2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5조(「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6조(「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7조(「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9조(「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남해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남해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전단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남해군 건축 조례」의 개정)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남해군 지하수 조례」의 개정) 남해군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16조(「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감정평가업”으로 한다.

제17조(「남해군 어항관리 조례」의 개정) 남해군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남해군 주차장 조례」의 개정)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각각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6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을 “(국장, 담당관 및 단장,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 을 “국장·담당관·단장·과장의 직급과 담당관·단장·과장” 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한시기구) ① 부군수 밑에 한시기구로 청사신축추진단을 둔다.

② 청사신축추진단의 분장사무는 청사행정, 청사건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재산세, 청사신축” 을 “재산세” 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청사신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43명” 을 “659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30명” 을 “646명” 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한시정원) 제4조의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등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에 따른 정원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 중 5명, 별표 3 중 5급 1명, 6급 이하 4명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경 력 문 관
비 율	1% 이내	6% 이내	26% 이내	32% 이내	27% 이내	7% 이상	1% 이내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	<u>100% 이내</u>	10% 이내	9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100% 이내	-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개정 2019. 12. 12>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보건소	농업 기술센터	
총계	659					
정무직계	1					
일반직계	629					
4급	4	4				
5급	34	16	3	1	4	10
6급이하 소계	59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7					

[별표 4]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 등(제6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소속부서	구분		정원 (명)	존속기한	비고
		직종	직급			
총 계				5		
본 청	청사신축추진단	일반직	5급	1	2023. 12. 30.	
본 청	청사신축추진단	일반직	6급 이하	4	2023. 12. 30.	

남해군 조례 제2498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란을 “성별영향평가”란으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이자수입금의”를 “해당 연도의 이자수입금 전액 및 적립금의 100분의 3”로 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499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에 따라 국가로부터 의료지원을 받는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00호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문화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문화관광해설사에 적용한다.

1. 경상남도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
2.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종전 남해군에서 관광도우미로 선발된 사람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탐방객이 해설을 요청하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명감과 애향심을 가지고 군의 관광문화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단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교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 및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홍보 및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증표)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그 밖에 남해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남해군 조례 제2501호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해화폐 화전(花錢)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해화폐 화전(花錢)” (이하 “남해화폐” 라 한다)이란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지역 화폐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 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남해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법 제2조제2호의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3. “가맹점” 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남해화폐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지역화폐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해화폐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남해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남해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남해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남해화폐의 유통지역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남해화폐의 종류는 종이형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1천원권
- 2. 5천원권
- 3. 1만원권

⑥ 남해화폐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발행권자
- 2. 발행일 및 유효기간
- 3. 유통지역
- 4. 판매대행점 및 가맹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홈페이지 주소
- 5. 그 밖에 군수가 남해화폐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남해화폐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협약 기간
- 2. 의무 이행 사항
- 3. 판매대행 수수료에 대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남해화폐의 판매량은 매일, 환전금액·환전잔액 및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판매대행점에 남해화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 3. 군에 본사를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 2. 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등록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부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남해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군수는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 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해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 2. 남해화폐의 홍보
- 3. 남해화폐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하며, 할인판매의 경우 개인당 일 30만원,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4. 남해화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 5. 남해화폐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제10조(지원) 군수는 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남해화폐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 2. 남해화폐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 3. 남해화폐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 4. 남해화폐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관리 사업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군수는 남해화폐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화폐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남해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
- 2. 남해화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3. 남해화폐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남해화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해군 경제살리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지정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남해군 남해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

남해군 조례 제2502호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 및 선박등과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등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협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고,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난된 선박 등의 예인에 소요되는 비용
- 2. 수난구호 참여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선박·자동차·항공기·토지·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비용
- 4. 구조된 물건의 운반·보관 또는 공매에 소요된 비용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 1. 남해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 2. 남해군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해군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 (단, 타지자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
-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원기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의 100 퍼센트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가산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성어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 스쿠버 동원의 경우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라 수난구호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난구호 참여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착오 등의

사유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사람에게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수난구호 비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 30일
------	-----	-----	------------

신청인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난사고명

활동 명세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시간)
	동원장비	
	활동구분	<input type="checkbox"/> 해상수색 <input type="checkbox"/> 수중수색 <input type="checkbox"/> 인명구조 <input type="checkbox"/> 구난활동
	세부 수행사항	

선박동원 내역	성명	(남/ 여)	생년월일	
	계좌번호			
	선명	(톤)	선종	
	소유자	(남/여)	기관마력	
	사용연료	<input type="checkbox"/> 경유 <input type="checkbox"/> 휘발유 <input type="checkbox"/> BA·BB유		

구호비용	금액	금 원
	산출근거	※필요시 첨부서류 제출

수난구호기관의 장 확인	해양경찰서장 (인)
	소방서장 (인)

「남해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난구호 비용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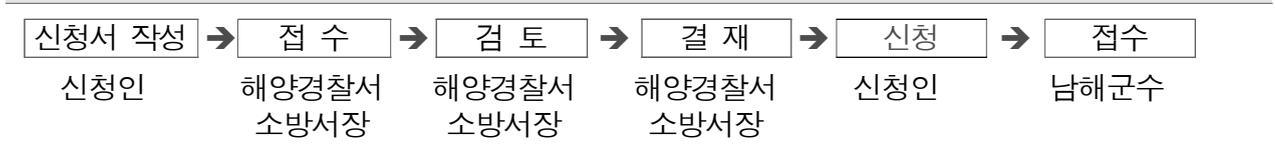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선박, 시설, 장비 등의 경우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	--

처리절차



남해군 조례 제2503호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마을안전 지킴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청년회장에 국한하여” 를 “청년회장 중에서” 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마을의 이장을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04호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해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05호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 및 국제 항공노선 운항에 따른 항공사 결손금
2. 군수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 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항공사업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한다.

제7조(지원금의 정산)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간 운항실적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지원 대상 항공사업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항공사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		
신청금액	금		원 (₩)
산출내역				
운항노선				
여객운임			운항기종 및 좌석수	
운항기간			운항횟수	
탑승현황	공급좌석 수			
	탑 승 객 수	(남: 명, 여: 명)		

「남해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정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소 속 성 명 (인)

남해군수 귀하

거래은행		예 금 주		계좌번호	
------	--	-------	--	------	--

- 첨부서류
1.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2. 운항기간 중 항공요금 승인 내역서
 3. 운항기간 중 탑승 현황
 4.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수
 5. 운항 사실 기록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남해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남해군 조례 제2506호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남해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시간·장소·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 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라 남해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향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과 범위) 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만 60세 이상의 군민
- 2. 치매환자 및 그 가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치매치료 및 진단검사비용
- 2. 치매환자를 위한 조호물품
- 3.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 4. 배회감지기 등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통신비 등 요금
- 5.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경비
- 6. 그 밖에 군수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및 치매환자가족의 부양부담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③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제2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경비
-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제6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남해군 보건소에 남해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 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
- 2.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
- 3. 치매안심센터 이용자를 위한 송영서비스 제공
- 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치매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남해군 지역사회치매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단체 및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치매업무 및 노인복지업무 담당 팀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임직원
2. 치매환자의 가족
3. 치매관련 전문가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및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남해군 포상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07호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기초학습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온종일 돌봄 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온종일 돌봄 정책 및 사업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온종일 돌봄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온종일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3. 온종일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온종일 돌봄 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온종일 돌봄 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
2.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사업
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4. 온종일 돌봄에 대한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 정착·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서비스
2.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의 급식 및 간식 제공
3.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교육·체육·문화·예술 활동 서비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제7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2. 온종일 돌봄 시설 간의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 1. 당연직 위원: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과장
-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남해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 기관 관계자
 - 나.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 다. 온종일 돌봄 시설 이용 학부모
 - 라. 그 밖에 군수가 온종일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체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군수는 온종일 돌봄 사업 확충 및 활성화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

제13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수요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고려하여 남해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돌봄 서비스의 우선지원)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아동에게 우선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1.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일하는 경우
- 2. 초등학교 저학년
- 3. 다자녀 가구 및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설치된 센터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거주 아동을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군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돌봄 아동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 1. 이용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 2. 이용아동의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 3. 그 밖에 지원에 따른 발생 비용

제16조(이용료 면제) ① 군수는 센터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자녀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 5.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센터의 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08호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509호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이란 바실러스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복합균, 클로렐라 등 친환경 농림축수산업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해군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친환경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
3. 친환경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배양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배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배양센터가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수급계획) 친환경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① 친환경미생물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림축수산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 지역 외의 자가 친환경미생물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 축수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

제9조(공급기준) 친환경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급대상, 미생물의 종류·처리방법·생산량 등을 종합 판단하여 정한 평균 기준량 범위 내
2. 군의 농림축수산업, 환경보전과 관련된 실증시험, 시험·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의 행정상 필요에 따른 경우
4.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공급가격) 친환경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단가는 별표와 같다.

제11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군 외로 반출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2. 판매, 교환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5. 친환경미생물 사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6.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련 서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대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82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 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 예수금: 1년 이상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수금: 6개월 이상

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이하 “예수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예수금의 이자는 예수일 현재 「남해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해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기금 및 회계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예수부서의 장은 기금 및 회계의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예수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예탁절차 및 약정)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을 예탁 받으려는 부서(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과 예탁부서의 약정에 따르며, 예탁약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5조(예탁대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기금의 예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 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탁조건) ① 기금의 예탁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으로 한다.

- ② 예탁이율은 군 금고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군수는 예탁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① 예탁금의 원리금(이하 “예탁원리금”이라 한다)의 상환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 ② 예탁원리금의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예탁원리금을 상환한다.
- ③ 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의 장이 예탁원리금을 약정된 기한까지 상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이 지난날부터 미납된 예탁원리금에 군 금고의 연체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예탁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예탁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카드)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탁 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서

기금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예탁부서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 간 다음과 같이 ○○○○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약정을 체결하고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이 약정서에서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예탁조건) “신청자”가 인수할 예탁금의 예탁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예탁번호:
- 2. 인수연월일: 년 월 일
- 3. 예탁목적: (사업)자금조달
- 4. 예탁금액: 원 (₩)
- 5. 이 자 율: 연 %
- 6. 상환기간:

제2조(상환방법) ① 예탁금의 원금은 인수일부터 ○년이 지난 ○○년 ○○월 ○○일에 상환한다. 다만, 예탁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는 운용관과 신청자의 협의 하에 상환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예탁금의 이자계산기간은 예탁일로부터 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며, 1년을 365일로 하고, 예탁된 날을 산입한다.

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기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6개월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인수분: 7월 15일
-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인수분: 다음 연도 1월 15일

④ 원리금 상환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를 납입한다.

⑤ 신청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전날까지의 일수에 군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⑥ 신청자는 원리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자금의 용도) 신청자는 예탁금을 제1조의 예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운용관은 예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상환의무) 신청자는 예탁 원리금을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및 준수 의무) ① 신청자는 조달되는 자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운용관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업계획 진행상황
- 2. 예탁금 운용상황
- 3. 그 밖에 운용관이 요구하는 모든 참고사항

② 운용관은 신청자에게 예탁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에 관한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용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운용관과 신청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남해군 통합기금운용관:

인

신 청 자:

인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관리카드

(예탁번호: / 예탁부서:)

예탁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예탁일	예탁금액			예탁조건		비고
		계	원금	이자	이율	상환	

원리금 회수상황

(단위 : 원)

회수계획			회수실적			회수잔액				
연월일	계	원금	이자	연월일	계	원금	이자	계	원금	이자
작성자				(인)		확인자		(인)		

남해군 규칙 제1183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 학 금 신 청 서

이 장 인 적 사 항

- 주 소: 남해군 읍면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이장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현재(년 월)
- 공적개요:

장 학생 인 적 사 항

- 학 교 명:
- 학 년: 학년 반 (학과)
- 성 명: (한자: , 성별: 남·여)
- 생년월일: (만 세)
- 성적 또는 특기개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조손가정 여부: 확인자: (인)

남해군 년도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읍면장 추천의견

붙임: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읍면장 (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규칙 제1184호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수단의 임무) 「남해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수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직장운동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 보좌 및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 업무 대행
3. 주무: 선수단 운영의 모든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4. 감독: 소속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총괄 등
5. 선수: 훈련, 각종 대회 참가 등

제3조(단원의 임용방법)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단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입단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입단계약 시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입단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경기실적증명서 1부
5.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감독에 한정함)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명함판 사진 2장
8. 채용신체검사서 1부
9. 서약서 1부(별지 제3호서식)

④ 감독 및 선수는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

⑤ 단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용된 단원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복무) ① 단원의 복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원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과 대회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단원에게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4에 따른 특별휴가와 대회에 출전 후 연간 2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조(훈련 및 대회참가) ① 감독은 연간 훈련 및 대회참가 계획을 월별로 수립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 상황을 일일훈련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경기결과를 통하여 훈련의 미비점을 분석·보완하여야 한다.

③ 감독은 선수들의 평가결과를 매월 말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선수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민체전 및 전국규모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의무) ①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선수가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②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제3조에 따른 계약서 작성 전 경력과 최근 성적을 감안하여 별표 1에 따라 감독과 선수의 등급을 결정한 후 별표 2의 범위에서 연봉을 결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8조(퇴직금) 선수단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9조(포상금 등) 단원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단원에게 포상금 및 국가대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대회 및 훈련 참가경비) ① 단원의 대회 참가, 훈련 등으로 인한 출장 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수의 체력보강을 위하여 식비를 1일당 10,000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선수등록비) 군수는 실업연맹가맹단체 규정에 따른 연회비 및 선수등록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상해보험 가입) 군수는 단원의 훈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비하여 임용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합숙소 운영)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합숙소의 관리책임자는 부단장이 된다.

② 군수는 합숙소의 임대료, 비품, 소모품비, 식비, 공공요금 등 숙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합숙소는 단원 중 이용을 희망하는 선수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감독은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의류 및 장비) ① 군수는 단원에게 각종 대회 참가 및 훈련에 필요한 의류와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류 구입 시 상의 앞면 왼쪽 가슴부분에 남해군청 상징마크를 부착하고, 뒷면에는 “남해군청” 문구를 새긴다.

제15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직장운동경기부의 회계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기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원의 등급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등급	등급결정기준
감독	1등급	· 전국대회 1위 입상자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지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등급	· 1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선수	1등급	· 현재 국가대표인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사람
	2등급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1위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5회 이상 입상한 사람
	3등급	· 최근 3년 이내 전국체전 3위 이상에 입상한 사람 · 최근 3년 이내 전국대회 3위 이상에 3회 이상 입상한 사람
	4등급	· 1등급부터 3등급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별표 2]

연봉의 심의범위 (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등급	연봉	
		하한액	상한액
감독	1등급	40,000	50,000
	2등급	30,000	40,000
선수	1등급	50,000	70,000
	2등급	40,000	50,000
	3등급	30,000	40,000
	4등급	20,000	30,000

[별표 3]

가. 포상금 지급 기준(제9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전국체전	전국대회	비고
1위	1,000	500	
2위	700	300	
3위	500	200	

1. 감독은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2. 국제대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공헌도에 따라 정한다.

나. 직장운동경기부 국가대표수당(제9조 관련)

(단위 : 천원)

구분		감독	선수	비고
국가대표수당	1진	월400	월1,000	
	2진	월200	월500	

※ 국가대표로 발탁된 자가 탈락한 경우에는 수당은 중지됨.

[별지 제1호 서식]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제3조제3항제1호 관련)

○ 종 목 :

○ 성 명 : (남/여)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본인은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단계약서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_____(이하 “단원”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군수와 단원이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본 선수단을 통해 남해군 체육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는 등 지역체육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속) 단원의 소속은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로 한다.

제4조(의무) 단원은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고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의 명예를 위해 감독과 선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수 및 지급방법) 단원의 연봉 금 _____원은 12개월로 나누어 일정액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 (단, 상호 협의에 따라 연봉 중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성적에 따라 따로 지급한다.

제6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군수” 와 “단원” 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남 해 군 수 (인)

성명 : _____ (인)

주소 : _____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제3조제3항제9호 관련)

본인은 남해군청 소속 복싱선수단원으로서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 사항을 위반 할 때에는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해임하여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 1.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에서 남해군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2.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복싱인의 품위를 유지한다.
- 3.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입단과 동시에 남해군으로 주소를 이전한다.
- 4. 남해군청 복싱선수단은 단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단장의 동의 없이 다른 실업팀으로 이적할 수 없다.

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반 시에는 해당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인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3호

남해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남해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을 발령한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산을 절감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해군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상품권 관리자”란 직접 또는 회계업무 담당부서에 요청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구매)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목적, 수량, 금액 등을 명확히 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한꺼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부서와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200만 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종류별·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여러 종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에 따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정부시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 또는 남해화폐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상품권의 사용) 상품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남해군 포상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2. 업무성과가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제도운영, 경진대회 및 공모전 개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4. 재난·사고에 의해 발생한 이재민, 피해자 및 그 유가족,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상품권 사용이 필요하다고 남해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상품권의 관리)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을 포함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증빙자료)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최종 수령인의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최종 수령인의 서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③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용도를 특별히 정하여 배부하거나 물품 등 다른 형태로 교환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 용도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 2. 물품 등을 구매하여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 3.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제7조(관리감독) ①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위법·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감사 또는 일상경비검사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 또는 검사하여야 한다.

- 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 2. 상품권 구매 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 여부
- 3. 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이나 사적사용 여부
- 4. 상품권 관리 실태 등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검사결과 상품권의 위법·부당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환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상품권의 구매·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종류, 구매용도, 구매수량, 구매액 등을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남해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0 - 205호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 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0일

남 해 군 수

1. 실시계획의 개요

- 사 업 명 :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사업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1 외 21필지
- 사업규모 : 급경사지 정비 1식(L=728.0m)
- 사 업 비 : 1,820백만원(공사비, 보상비, 설계비 등)
- 사업기간 : 2019. 1. ~ 2021. 6.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
- 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3.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 남해군 재난안전과 비치 및 열람 가능

4.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 결과

- 타부서 및 타 기관 사업의 중복성과 연계성은 없음

5.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해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6. 연차별 투자계획

사 업 명	구분	합계	'20년까지	'21년 추진	비 고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 역 정비공사	사업내용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실시설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 보상협의 · 급경사지정비	
	사업비(백만원)	1,820	1,420	400	
	국비	910	710	200	
	도비	273	213	60	
	군비	637	497	140	

7.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토록 하고,
-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연2회(해빙기, 우기)이상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장기적인 안전관리 예정

8.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하는 토지와 그 소유자 명세 : 붙임 참조

9.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순위	읍면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분할전	분할후		대장면적	편입면적	주소	성명
1	상주면 양아리	1255	1255-1	임야	109	51		정성0
2	상주면 양아리	1256	1256-1	전	1,101	796	상주면 양아리	정차0
3	상주면 양아리	1257	1257-1	전	1,157	568		정성0
4	상주면 양아리	1266	1266-1	전	122	14	이동면 양아리	정달0
5	상주면 양아리	1272	1272-1	전	225	54	부산광역시 서구	정균0
6	상주면 양아리	산265-1	산265-7	임야	17,785	153	이동면 양아리	이규0
7	상주면 양아리	산267-2	산267-4	임야	2,661	652	사천시 정동면	강효0
8	상주면 양아리	산270	산270-1	임야	3,471	676	이동면 양아리	김도0 외 2
9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1	임야	14,678	183	상주면 양아리	정차0
10	상주면 양아리	산272	산272-2	임야	14,678	52	상주면 양아리	정차0

남해군 고시 제2020 - 210호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정정고시

남해군 고시 제2019-133호(2019.10.24.)로 최종 고시된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구,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문의 오기사항의 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정정
 -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정정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신전숲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 **정정**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1 (당초)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라목 그밖에 유사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11 (변경)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라목 그밖에 유사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 변경사유 : 고시 오기 정정

2) 공공시설용지 - 변경없음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남해군 고시 제2020 - 211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변경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139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변경 고시내역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실치일	표지제결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0107	중부	147424.010	281216.930	247732.619	281291.631	31.799	127 53 18.8328	34 49 20.008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08	중부	147644.240	281416.750	247952.852	281491.447	29.008	127 53 26.7716	34 49 27.0664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09	중부	149125.040	284142.980	249433.702	284217.624	2.053	127 55 14.5723	34 50 14.34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88	중부	148704.340	285044.880	249013.019	285119.530	3.247	127 55 49.9110	34 50 00.426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89	중부	148135.900	286328.390	248444.611	286403.049	2.937	127 56 40.2078	34 49 41.594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0	중부	147994.450	286163.270	248303.154	286237.933	3.086	127 56 33.6585	34 49 37.055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1	중부	145271.270	287525.010	245580.024	287599.725	6.097	127 57 26.2193	34 48 08.281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2	중부	145145.970	287584.010	245454.723	287658.725	4.712	127 57 28.4931	34 48 04.197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3	중부	142228.480	290088.850	242537.288	290163.608	124.826	127 59 05.8988	34 46 28.751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4	중부	142195.510	290200.880	242504.329	290275.633	126.199	127 59 10.2891	34 46 27.64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5	중부	142537.850	285928.280	242846.579	286003.050	5.460	127 56 22.4067	34 46 40.000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6	중부	142528.670	285817.830	242837.395	285892.603	7.200	127 56 18.0601	34 46 39.81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0	중부	138465.060	286680.960	238773.822	286755.813	3.905	127 56 50.4986	34 44 27.703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1	중부	138305.140	286641.000	238613.897	286715.850	2.581	127 56 48.8885	34 44 22.526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2	중부	135776.500	288001.060	236085.296	288075.954	9.462	127 57 41.3785	34 43 00.062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3	중부	135669.070	288081.490	235977.868	288156.391	22.717	127 57 44.4988	34 42 56.552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4	중부	137716.380	289768.550	238025.205	289843.384	48.275	127 58 51.5729	34 44 02.462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5	중부	138081.950	289771.140	238390.770	289845.983	70.266	127 58 51.8163	34 44 14.312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신	황신	중신	황신							
도근점	12046	중부	136019.610	289824.310	236328.447	289899.197	34.673	127 58 53.1168	34 43 07.380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7	중부	136224.740	289736.450	236533.569	289811.326	29.908	127 58 49.7414	34 43 14.064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8	중부	137234.200	286025.340	237542.956	286100.221	35.474	127 56 24.2770	34 43 47.9653	2020.10.23.	맨홀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49	중부	137219.000	285810.660	237527.755	285885.537	46.270	127 56 15.8340	34 43 47.537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50	중부	137201.380	285680.560	237510.136	285755.439	52.917	127 56 10.7145	34 43 47.004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51	중부	137374.180	286034.550	237682.947	286109.429	2.634	127 56 24.6803	34 43 52.504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62	중부	137379.560	285942.200	237688.319	286017.080	2.533	127 56 21.0828	34 43 52.707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2063	중부	137249.240	285934.890	237557.999	286009.772	24.666	127 56 20.7277	34 43 48.4808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5	중부	142048.840	296217.900	242357.769	296292.631	3.492	128 03 06.8863	34 46 20.910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6	중부	142475.870	296031.410	242784.789	296106.129	3.530	128 02 59.6665	34 46 34.828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7	중부	147188.010	297181.320	247496.940	297255.948	3.409	128 03 46.8469	34 49 07.323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8	중부	147300.630	297028.910	247609.549	297103.537	2.389	128 03 40.8845	34 49 11.023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69	중부	148163.810	295917.800	248472.704	295992.406	2.734	128 02 57.5348	34 49 39.414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0	중부	147932.240	295777.870	248241.128	295652.488	1.938	128 02 51.9343	34 49 31.947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1	중부	141131.510	293016.230	241440.380	293090.993	121.176	128 01 00.5707	34 45 52.214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2	중부	140702.570	292683.420	241011.437	292758.186	130.653	128 00 47.3157	34 45 38.406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3	중부	148522.820	292411.560	248881.645	292486.184	2.353	128 00 39.7181	34 49 52.228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4	중부	148466.590	292130.630	248775.410	292205.254	2.917	128 00 28.6416	34 49 50.495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5	중부	147212.820	289306.750	247521.593	289381.410	3.025	127 58 37.0463	34 49 10.720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일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신	황신	중신	황신							
도근점	13076	중부	147197.770	289146.100	247506.544	289220.767	2.763	127 58 30.7201	34 49 10.283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13	중부	134611.160	294791.500	294920.091	294866.385	2.133	128 02 07.7365	34 42 20.066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14	중부	134727.160	294962.680	235036.093	295037.566	3.777	128 02 14.5000	34 42 23.7761	2020.10.23.	맨홀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15	중부	135738.400	295635.860	236047.351	295710.722	2.101	128 02 41.3664	34 42 56.3613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16	중부	135571.590	295613.290	235880.536	295688.153	2.803	128 02 40.4115	34 42 50.966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17	중부	136577.180	292563.350	236886.057	292638.211	5.057	128 00 40.9671	34 43 24.563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18	중부	136650.050	292697.310	236958.936	292772.165	3.915	128 00 46.2600	34 43 26.9139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19	중부	137185.490	294690.670	237494.408	294765.506	2.682	128 02 04.8104	34 43 43.623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0	중부	136996.610	294712.940	237305.530	294787.779	2.498	128 02 05.6333	34 43 37.4637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1	중부	133502.250	296189.860	233811.204	296264.758	2.968	128 03 02.2190	34 41 43.6203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2	중부	133851.130	296051.920	234160.075	296126.807	3.269	128 02 56.9426	34 41 54.966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3	중부	133758.480	296097.290	234067.434	296172.186	2.539	128 02 58.6874	34 41 51.9662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4	중부	133674.750	296124.950	233983.704	296199.848	3.415	128 02 59.7397	34 41 49.239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5	중부	133834.210	296182.330	234143.158	296257.218	3.431	128 03 02.0589	34 41 54.383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6	중부	133623.880	296660.890	233992.842	296735.785	29.194	128 03 20.7728	34 41 47.4070	2020.10.23.	맨홀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7	중부	133666.880	296671.390	233975.839	296746.280	28.387	128 03 21.2029	34 41 48.7885	2020.10.23.	맨홀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8	중부	133712.950	296645.800	234021.912	296720.688	29.257	128 03 20.2165	34 41 50.3021	2020.10.23.	맨홀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29	중부	133753.310	296641.800	234062.266	296716.697	27.243	128 03 20.0763	34 41 51.6128	2020.10.23.	맨홀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0	중부	133787.320	296638.520	234096.271	296713.413	27.599	128 03 19.9613	34 41 52.717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일	측량성과 모관장소	비고
			중신	황신	중신	황신							
도근점	14031	중부	133667.220	296749.260	233976.178	296824.152	5.960	128 03 24.2822	34 41 48.783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2	중부	133803.420	296780.660	234112.380	296855.553	5.824	128 03 25.5519	34 41 53.191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3	중부	133880.050	296522.510	234189.005	296597.404	2.965	128 03 15.4421	34 41 55.765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4	중부	133967.460	296576.090	234276.419	296650.979	2.586	128 03 17.5828	34 41 58.583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5	중부	132748.430	295620.310	233057.379	295695.216	2.976	128 02 39.5379	34 41 19.3539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6	중부	132696.770	295688.730	233005.713	295763.641	2.665	128 02 42.2046	34 41 17.654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7	중부	132447.130	295772.300	232756.079	295847.217	44.238	128 02 45.3856	34 41 09.5288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8	중부	132370.150	295842.480	232679.100	295917.400	50.838	128 02 48.1103	34 41 07.005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4039	중부	132507.040	295750.050	232815.987	295824.968	46.026	128 02 44.5361	34 41 11.4780	2020.10.23.	표철 육상물구멍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1	중부	142329.780	282319.070	242638.433	282393.867	67.743	127 54 00.4040	34 46 34.3888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2	중부	142484.840	282476.150	242793.496	282550.937	75.513	127 54 06.6353	34 46 39.384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3	중부	142050.410	280716.820	242359.037	280791.627	22.448	127 52 57.3009	34 46 25.794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4	중부	142145.960	280642.180	242454.584	280716.983	30.667	127 52 54.3966	34 46 28.916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5	중부	142281.630	279676.890	242590.237	279751.696	7.269	127 52 16.4955	34 46 33.5009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6	중부	142470.990	279333.420	242779.581	279408.222	4.913	127 52 03.0440	34 46 39.831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7	중부	138822.180	278161.190	239130.766	278236.069	2.868	127 51 15.7289	34 44 41.7623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8	중부	138417.770	278324.400	238726.367	278399.286	3.217	127 51 22.0055	34 44 28.555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09	중부	138858.120	280632.270	239166.759	280707.138	105.747	127 52 52.8775	34 44 42.238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10	중부	139030.860	280453.520	239339.496	280528.387	66.583	127 52 45.9103	34 44 47.8837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질	측량성과 모관장소	비고
			중신	횡신	중신	횡신							
도근점	15011	중부	137327.550	278804.050	237636.161	278878.957	2.908	127 51 40.4973	34 43 53.088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12	중부	137334.160	278805.710	237642.767	278880.618	2.926	127 51 40.5648	34 43 53.300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13	중부	137362.540	278924.960	237671.147	278999.869	5.197	127 51 45.2612	34 43 54.1887	2020.10.23.	맨홀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14	중부	136927.460	281551.230	237236.123	281626.129	105.880	127 53 28.3297	34 43 39.3312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15	중부	136961.060	281712.940	237269.728	281787.835	106.714	127 53 34.6667	34 43 40.375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16	중부	138723.950	283267.650	239032.637	283342.514	3.759	127 54 36.4242	34 44 37.1242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5017	중부	138935.190	283222.150	239243.882	283297.005	4.292	127 54 34.7104	34 44 43.9918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23	중부	146700.710	279302.390	247009.283	279377.114	43.252	127 52 03.2380	34 48 57.0816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24	중부	147153.500	279390.340	247462.074	279465.049	78.588	127 52 06.8719	34 49 11.7486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25	중부	145972.360	277191.380	246280.895	277266.121	4.552	127 50 39.9636	34 48 34.0817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26	중부	145761.620	277200.860	246070.160	277275.606	10.210	127 50 40.2869	34 48 27.191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27	중부	151931.010	274257.330	252239.454	274331.963	2.436	127 48 46.4323	34 51 48.157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28	중부	151820.020	274475.440	252128.465	274550.074	2.888	127 48 54.9830	34 51 44.4886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29	중부	154352.070	275784.780	254660.529	275859.361	3.300	127 49 47.3494	34 53 06.308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30	중부	154464.720	275851.560	254773.181	275926.138	3.539	127 49 50.0166	34 53 09.9453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31	중부	150005.320	277358.010	250313.847	277432.691	762.970	127 50 47.8555	34 50 44.844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6032	중부	150012.250	277419.170	250320.775	277493.845	754.520	127 50 50.2847	34 50 45.062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7059	중부	155400.230	279642.970	255708.764	279717.509	8.493	127 52 19.6278	34 53 39.2563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7060	중부	155230.920	279784.320	255539.464	279858.867	8.104	127 52 25.1364	34 53 33.723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일	측량성과 모관장소	비고
			중신	횡신	중신	횡신							
도근점	17061	중부	157328.850	279865.300	257637.378	279939.799	297.011	127 52 29.0462	34 54 41.7703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2	중부	157230.370	279835.680	257538.905	279910.180	277.419	127 52 27.8446	34 54 38.588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3	중부	157139.640	279766.680	257448.167	279841.185	256.209	127 52 25.0969	34 54 35.6690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4	중부	157610.130	277952.850	257918.624	278027.347	2.622	127 51 13.8105	34 54 51.481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5	중부	157663.710	277665.680	257972.195	277740.177	2.557	127 51 02.5168	34 54 53.249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0	중부	160112.170	278979.940	260420.683	279054.383	2.164	127 51 55.1178	34 56 12.328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1	중부	160344.620	279139.280	260653.135	279213.725	2.436	127 52 01.4763	34 56 19.825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2	중부	161171.810	281444.010	261480.356	281518.430	2.362	127 53 32.5751	34 56 46.0085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3	중부	161220.410	281558.860	261528.965	281633.276	2.450	127 53 37.1177	34 56 47.5624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4	중부	160692.980	282580.560	261001.552	282654.999	2.693	127 54 17.1907	34 56 30.141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5	중부	160828.580	282703.770	261137.147	282778.208	2.873	127 54 22.0869	34 56 34.5062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6	중부	155733.720	283604.570	256042.329	283679.083	23.302	127 54 55.7549	34 53 48.982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7	중부	155487.870	283799.090	255796.487	283873.611	12.123	127 55 03.3270	34 53 40.897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8	중부	154291.960	283002.720	254600.566	283077.283	3.330	127 54 31.5401	34 53 02.330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19	중부	154069.020	282811.940	254377.627	282886.510	2.506	127 54 23.9480	34 52 55.155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0	중부	149042.390	290818.140	249351.189	290892.758	2.565	127 59 37.2211	34 50 09.6019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1	중부	149076.000	290536.310	249384.790	290610.928	2.849	127 59 26.1488	34 50 10.7826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2	중부	150086.260	288814.660	250395.010	288889.263	2.606	127 58 18.7788	34 50 44.1067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63	중부	150179.200	288690.680	250487.947	288765.279	2.655	127 58 13.9347	34 50 47.1611	2020.10.23.	표철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철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신	횡신	중신	횡신							
도근점	19064	중부	152280.420	287813.580	252589.136	287888.140	2.774	127 57 40.2064	34 51 55.610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65	중부	152467.360	287846.600	252776.074	287921.156	2.997	127 57 41.5768	34 52 01.665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66	중부	153707.780	288822.770	254016.516	288897.303	2.312	127 58 20.4780	34 52 41.607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67	중부	153596.380	288706.700	253905.111	288781.230	3.605	127 58 15.8855	34 52 35.029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68	중부	155438.040	290230.750	255746.793	290305.234	2.472	127 59 16.5822	34 53 37.300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69	중부	155919.570	290482.760	256228.318	290557.230	2.821	127 59 26.6631	34 53 52.8426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0	중부	157028.800	290958.230	257337.553	291032.675	2.844	127 59 45.8511	34 54 28.679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1	중부	157100.650	290949.780	257409.400	291024.228	2.879	127 59 45.5466	34 54 31.0130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2	중부	158188.120	294284.440	258496.943	294358.843	2.288	128 01 57.3241	34 55 05.2022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3	중부	158246.970	294190.350	258555.787	294264.759	2.614	128 01 53.6420	34 55 07.1428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4	중부	154609.970	292781.640	254918.772	292856.137	2.383	128 00 56.7025	34 53 09.6067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5	중부	154586.000	292703.320	254894.809	292777.813	2.294	128 00 53.6600	34 53 08.8549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6	중부	153613.460	292523.380	253922.269	292597.889	2.541	128 00 46.1374	34 52 37.3566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7	중부	153888.660	292426.070	254197.467	292500.574	2.541	128 00 42.4154	34 52 46.3204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8	중부	150981.330	292979.040	251290.154	293053.606	7.825	128 01 03.0271	34 51 11.8088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79	중부	150788.880	292891.490	251097.704	292966.064	8.658	128 00 59.5047	34 51 05.594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0	중부	150759.840	291293.140	251068.636	291367.721	43.613	127 59 56.5849	34 51 05.1726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1	중부	150714.820	291188.890	251023.613	291263.472	44.492	127 59 52.4641	34 51 03.7455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2	중부	149407.890	298384.520	249716.832	298459.093	4.327	128 04 35.1152	34 50 18.9317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실치일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신	형신	중신	형신							
도근점	19083	중부	149653.140	298335.440	249982.077	298410.007	3.027	128 04 33.2872	34 50 28.9058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4	중부	150946.710	296270.480	251255.601	296345.029	3.427	128 03 12.5586	34 51 09.5856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5	중부	151193.700	296573.950	251502.600	296648.493	2.128	128 03 24.6059	34 51 17.4859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6	중부	153947.710	296878.810	254256.610	296953.293	2.606	128 03 37.7488	34 52 46.7451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7	중부	153909.680	296700.160	254218.571	296774.655	2.553	128 03 30.7007	34 52 45.5723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8	중부	155135.620	295424.550	255444.477	295499.017	2.684	128 02 40.9807	34 53 25.7812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도근점	19089	중부	155055.110	295333.960	255363.968	295408.431	1.902	128 02 37.3807	34 53 23.1998	2020.10.23.	표철	남해군정	신규

남해군 고시 제2020 - 2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변경)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남 해 군 수

- 1. 하 천 명 : 화천(지방하천)
- 2. 성 명 : 이현*
- 3. 주 소 : 남해군 미조면 미송로 **
- 4. 점용목적 : 단독주택 진입로 및 배수관설치
- 5. 변경사항 : 진입로 및 배수관 설치 위치 등
- 6.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 1171-3번지
- 7. 점용면적 : 33㎡
- 8. 점용기간 : 2020. 3. 24. ~ 2025. 3. 23.

남해군 고시 제2020 - 2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난음천(지방하천)
2. 성 명 :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3. 주 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4. 점용목적 : 저류시설 설치
5. 점용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난음리 2063번지 일원
6. 점용면적 : 350㎡(영구점용 98㎡, 일시점용 252㎡)
7. 점용기간 : 2020. 12. 1. ~ 영구(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남해군 고시 제2020 - 216호

**남해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이순신순국공원)**

남해군 공고 제2018-74호(2018.1.15.)로 공사완료 공고된 남해군계획시설이순신순국공원의 공원구역 및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 1. 위 치 : 남해군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 일원
- 2. 면 적 : 89,401㎡ → 89,120.5㎡(감: 280.5㎡)
- 3. 남해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붙임참조
- 4. 관계도면 : 실음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 게시할 예정
 이오니 열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남해군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2.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1)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이순신 순국공 원	역사 공원	고현면 차면리 723번지일원	89,401	감)280.5	89,120.5	경상남도고시 제2011-486호 (2011.11.24)	-

■ 변경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7	이순신 순국공원	○ 구역변경 - 면적 : 89,401.0m ² → 89,120.5m ² (감 : 280.5m ²)	○ 지적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이 변경되어 금회 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m ²)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89,401	감)280.5	89,120.5	100.0	
교양시설	43,123	감)280.5	42,842.5	48.1	
휴양시설	4,680	-	4,680.0	5.2	
편익시설	26,578	-	26,578.0	29.8	
조경시설	15,020	-	15,020.0	16.9	

■ 시설별 조서

시설명	시설 번호	면적(m ²)			건축면적(m ²)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계		89,401	감)280.5	89,120.5	1,951.44	-	1,951.44	
교양시설		43,123	감)280.5	43,123	803.52	-	803.52	
각서공원	1	5,206	-	5,206	365.77	-	365.77	
위령탑	2	411	-	411	-	-	-	
리더쉽체험관	3	8,374	-	8,374	414.95	-	414.95	
인물체험공원	4	1,975	-	1,975	-	-	-	
바다광장	5	18,421	-	18,421	22.80	-	22.80	
조성녹지	6	8,736	감)280.5	8,455.5	-	-	-	측량 반영
휴양시설		4,680	-	4,680	-	-	-	
산책로	7	1,423	-	1,423	-	-	-	
하천	8	1,112	-	1,112	-	-	-	
조성녹지	9	2,145	-	2,145	-	-	-	
편의시설		26,578	-	26,578	1,139.05	-	1,139.05	
하늘바다휴게소	10	1,409	감)1,409	-	396.73	감)396.73	-	용도 변경
관리사무소		-	증)1,409	1,409	-	증)396.73	396.73	
주차장	11	14,321	-	14,321	-	-	-	
이순신뱃상체험관	12	1,902	-	1,902	434.76	-	434.76	
야외화장실	13	609	-	609	307.56	-	307.56	
도로	14	7,416	-	7,416	-	-	-	
진입도로	15	499	-	499	-	-	-	
조성녹지	16	422	-	422	-	-	-	
조경시설		15,020	-	15,020	8.87	-	8.87	
조경시설	17	15,020	-	15,020	8.87	-	8.87	

남해군 고시 제2020 - 217호

남해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2 및 소로3-56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남해군 고시 제2020-109호(2020.6.23.)로 결정 고시 된 군계획시설(사회복지 시설2 및 소로3-56호선)에 대하여,
2. 해당 군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인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해군청(도시건축과☎055-860-3413, 남해군 보건소☎055-860-8749)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12월 8일

남 해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남해군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도로) 조성사업
 - 명칭 : 사회복지시설2 및 소로3-56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회복지시설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합 계	6,537	100.0	
노유자시설	1,370	21.0	
창 고	243	3.7	
보 도	436	6.7	
휴게공간	393	6.0	
도로 및 주차장	1,656	25.3	
녹 지	2,439	37.3	

■ 도로

구 분		연 장 (m)	폭 (m)	비 고
도로명	소로3-56호	263	6.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남해군수(담당부서: 보건소)
- 주소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사회복지시설2)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7,193	6,537					
1	아산리	150	대	5,600	4,951	남해군				
2	아산리	150-1	대	993	991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3	아산리	150-5	답	60	55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4	아산리	155-1	대	480	480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5	아산리	155-12	창	60	60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 토지조서(소로3-56호)

연번	주 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외권리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계				10,885	1,588					
1	아산리	150-4	도	767	661	남해군				
2	아산리	150-1	대	993	2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3	아산리	150-5	답	60	5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4	아산리	157	대	2,935	475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0			
5	아산리	158-3	도	1,562	340	장O세	남해군 남해읍 북변리 521-1			
6	아산리	170	대	3,491	6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0			
7	아산리	170-1	대	92	92	사회복지법인 벽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170			
8	아산리	170-2	대	40	6	의료법인 이도의료재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16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 (남해군지부)	근저당
9	아산리	172-2	도	945	1	윤O선	북변동 559-1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남해군 고시 제2020 - 218호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도근점)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남 해 군 수

- 측량성과 고시현황
 - 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224점
 - 측량성과고시 내용: 붙임 참조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지적기준점) 고시내역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재질	측량성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3239	중부	143603.48	293410.08	243912.134	293484.141	47.903	128 01 17.0164	34 47 12.28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기 존
도근점	3240	중부	143684.07	293375.04	243992.645	293449.488	46.822	128 01 15.6858	34 47 14.907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기 존
도근점	3513	중부	144919.42	295246.60	245227.947	295321.351	80.227	128 02 29.8058	34 47 54.36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기 존
도근점	10110	중부	148622.25	281813.62	248930.857	281888.310	17.918	127 53 42.7304	34 49 58.714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1	중부	148550.52	281833.52	248859.130	281908.205	16.205	127 53 43.4881	34 49 56.381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2	중부	148600.37	282033.68	248908.983	282108.367	14.041	127 53 51.3821	34 49 57.9414	2020.11.25.	맨홀식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3	중부	148703.70	281972.38	249012.316	282047.064	14.85	127 53 49.0062	34 50 01.312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15	중부	149178.49	298434.62	249487.416	298509.19	48.908	128 04 36.9898	34 50 11.470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16	중부	149240.7	298278.08	249549.618	298352.648	59.479	128 04 30.8560	34 50 13.543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17	중부	149117.3	298296.35	249426.217	298370.919	53.308	128 04 31.5229	34 50 09.53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18	중부	149151.69	298150.58	249460.606	298225.157	61.391	128 04 25.8016	34 50 10.699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4	중부			247576.976	282581.414	59.511	127 54 09.5253	34 49 14.584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5	중부			247437.179	282745.044	73.795	127 54 15.9137	34 49 10.000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6	중부			247401.341	282793.870	78.026	127 54 17.8220	34 49 08.82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7	중부			247672.962	283061.485	73.084	127 54 28.4478	34 49 17.558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8	중부			247629.437	283119.964	79.878	127 54 30.7332	34 49 16.128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19	중부			247577.593	282422.969	53.315	127 54 03.2915	34 49 14.650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20	중부			247504.244	282717.324	69.561	127 54 14.8468	34 49 12.184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21	중부			247682.331	282745.840	62.403	127 54 16.0320	34 49 17.954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22	중부			247721.258	282931.442	69.127	127 54 23.3484	34 49 19.16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23	중부			247526.780	283074.424	80.004	127 54 28.9049	34 49 12.811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0124	중부			247783.865	283120.062	78.651	127 54 30.7921	34 49 21.139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7	중부			243341.002	284868.034	73.763	127 55 37.9525	34 46 56.464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8	중부			243014.651	285004.548	36.667	127 55 43.2025	34 46 45.834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099	중부			243314.989	287394.740	14.966	127 57 17.3089	34 46 54.852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0	중부			243357.569	287498.617	17.351	127 57 21.4099	34 46 56.202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1	중부			243276.181	287542.748	13.521	127 57 23.1149	34 46 53.547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2	중부			243207.774	287631.283	14.286	127 57 26.5709	34 46 51.300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3	중부			243292.937	287692.603	21.857	127 57 29.0143	34 46 54.044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4	중부			243247.7	287795.384	23.726	127 57 33.0393	34 46 52.545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특지계		세계특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질	측량상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1105	중부			246693.094	286325.684	3.992	127 56 36.5156	34 48 44.787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6	중부			246699.646	286078.785	7.281	127 56 26.8048	34 48 45.075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7	중부			246794.381	286135.315	5.22	127 56 29.0637	34 48 48.132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8	중부			247298.897	285910.744	7.107	127 56 20.4146	34 49 04.570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09	중부			247427.983	286147.35	3.91	127 56 29.7711	34 49 08.686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0	중부			248236.85	285876.806	8.333	127 56 19.4246	34 49 35.013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1	중부			248532.667	285826.427	3.672	127 56 17.5512	34 49 44.627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2	중부			248818.236	285502.658	4.177	127 56 04.9160	34 49 53.991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3	중부			248663.241	285265.34	8.382	127 55 55.5209	34 49 49.033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4	중부			247552.959	284618.055	41.147	127 55 29.6479	34 49 13.203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5	중부			247353.175	284689.42	41.397	127 55 32.3832	34 49 06.699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6	중부			247686.331	284977.083	30.568	127 55 43.8223	34 49 17.423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7	중부			247951.567	285291.008	21.417	127 55 56.2707	34 49 25.934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8	중부			247614.632	285422.044	19.84	127 56 01.3031	34 49 14.962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19	중부			248992.657	285284.412	2.839	127 55 56.3919	34 49 59.716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0	중부			248923.165	285418.409	2.902	127 56 01.6393	34 49 57.421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1	중부			248874.149	285540.392	2.906	127 56 06.4214	34 49 55.793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2	중부			248778.432	285670.624	2.694	127 56 11.5108	34 49 52.648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3	중부			248493.186	285932.545	2.512	127 56 21.7122	34 49 43.314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4	중부			248158.961	285569.5	14.45	127 56 07.3044	34 49 32.579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5	중부			248336.782	285298.383	14.737	127 55 56.7017	34 49 38.431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6	중부			248508.933	285058.482	11.875	127 55 47.3249	34 49 44.089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7	중부			248418.348	284996.342	14.082	127 55 44.8468	34 49 41.168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8	중부			247791.379	284830.892	31.139	127 55 38.1086	34 49 20.875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29	중부			247813.067	285072.084	27.187	127 55 47.6063	34 49 21.506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0	중부			248479.508	285531.177	9.79	127 56 05.9140	34 49 42.991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1	중부			248072.421	286170.017	3.924	127 56 30.9009	34 49 29.589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2	중부			247942.877	286157.425	3.328	127 56 30.2468	34 49 15.656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3	중부			247859.213	286023.078	6.647	127 56 25.0408	34 49 22.716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4	중부			247567.936	285764.413	11.981	127 56 14.7563	34 49 13.344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5	중부			247466.808	285554.804	17.852	127 56 06.4723	34 49 10.126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6	중부			246789.1	286042.19	6.553	127 56 25.3981	34 48 47.989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특지계		세계특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질	측량상과 보관장소	비고
			종선	횡선	종선	횡선							
도근점	11137	중부			246778.489	286235.718	4.067	127 56 33.0078	34 48 47.586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8	중부			246697.968	286241.577	4.275	127 56 33.2085	34 48 44.971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1139	중부			246592.574	286249.537	4.13	127 56 33.4828	34 48 41.549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7	중부			246355.803	290775.856	29.308	127 59 31.4553	34 48 32.451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8	중부			246404.285	290896.57	32.296	127 59 36.2229	34 48 33.986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79	중부			246257.173	291516.666	51.846	128 00 00.5589	34 48 29.012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0	중부			246249.686	291648.291	57.045	128 00 05.7339	34 48 28.727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1	중부			245487.486	294862.188	96.817	128 02 11.8511	34 48 02.938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2	중부			245436.418	295032.406	117.71	128 02 18.5256	34 48 01.224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3	중부			245250.676	295106.945	113.993	128 02 21.3819	34 47 55.1730	2020.11.25.	맨홀식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4	중부			245392.952	295337.604	72.941	128 02 30.5125	34 47 59.711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5	중부			245371.838	295193.733	85.017	128 02 24.8449	34 47 59.075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6	중부			245843.932	293344.199	33.559	128 01 12.2848	34 48 15.008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7	중부			245869.839	293395.456	31.761	128 01 14.3114	34 48 15.831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8	중부			245908.994	293326.289	33.36	128 01 11.6063	34 48 17.125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89	중부			245985.879	293295.702	34.195	128 01 10.4338	34 48 19.629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0	중부			245914.868	293456.363	29.513	128 01 16.7252	34 48 17.272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1	중부			245947.752	293551.2	28.532	128 01 20.4689	34 48 18.308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2	중부			245755.123	293882.764	22.419	128 01 33.4339	34 48 11.948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3	중부			245729.068	294067.918	20.41	128 01 40.7065	34 48 11.041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4	중부			245339.005	293783.969	26.364	128 01 29.3807	34 47 58.480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5	중부			245348.086	293839.873	26.385	128 01 31.5832	34 47 58.756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6	중부			245228.236	293776.81	26.765	128 01 29.0546	34 47 54.888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7	중부			244223.511	293452.02	45.461	128 01 15.8777	34 47 22.396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8	중부			244118.834	293454.154	48.191	128 01 15.9197	34 47 18.999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099	중부			244057.441	293348.184	46.77	128 01 11.7276	34 47 17.042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0	중부			243401.081	293348.842	56.017	128 01 11.4913	34 46 55.746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1	중부			243443.225	293222.757	56.471	128 01 06.5498	34 46 57.155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2	중부			243283.235	293432.728	57.223	128 01 14.7431	34 46 51.895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3	중부			243049.616	293315.243	60.178	128 01 10.0297	34 46 44.354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4	중부			242811.471	293274.12	65.965	128 01 08.3176	34 46 36.640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5	중부			245566.809	296169.583	27.728	128 03 03.3087	34 48 05.071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질	측량상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3106	중부			245607.396	296130.971	32.246	128 03 01.8066	34 48 06.401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7	중부			242510.96	293411.404	74.265	128 01 13.5959	34 46 26.845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8	중부			242609.485	293431.612	71.996	128 01 14.4299	34 46 30.035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09	중부			242592.075	293329.917	70.751	128 01 10.4241	34 46 29.504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10	중부			242084.57	293123.276	78.263	128 01 02.0965	34 46 13.105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11	중부			241814.011	292981.415	85.02	128 00 56.4110	34 46 04.37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12	중부			241705.798	292957.14	86.776	128 00 55.4135	34 46 00.870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13	중부			241809.021	293124.691	83.298	128 01 02.0424	34 46 04.164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14	중부			241777.685	293060.201	83.596	128 00 59.4943	34 46 03.169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3115	중부			241683.806	293004.559	85.992	128 00 57.2692	34 46 00.141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8	중부			243133.02	278900.358	14.637	127 51 43.1915	34 46 51.441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19	중부			243286.641	279539.673	27.199	127 52 08.3858	34 46 56.246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0	중부			243306.498	279721.591	36.277	127 52 15.5469	34 46 56.840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1	중부			243171.755	279711.818	34.315	127 52 15.1166	34 46 52.470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2	중부			243160.551	278998.677	16.381	127 51 47.0674	34 46 52.307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3	중부			243098.099	278668.395	10.007	127 51 34.8440	34 46 50.367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4	중부			243225.788	278699.424	11.295	127 51 35.3207	34 46 54.507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5	중부			243208.091	278495.673	6.916	127 51 27.3018	34 46 53.989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6	중부			243281.466	278307.432	6.601	127 51 19.9235	34 46 56.4223	2020.11.25.	맨홀식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7	중부			243233.307	278951.717	15.662	127 51 45.2452	34 46 54.680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8	중부			242923.187	278490.055	6.5	127 51 26.9853	34 46 44.746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29	중부			242903.445	278228.802	2.906	127 51 16.7047	34 46 44.176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0	중부			242426.616	281573.179	45.667	127 53 28.0574	34 46 27.7634	2020.11.25.	맨홀식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1	중부			242320.879	281378.981	39.825	127 53 20.3841	34 46 24.388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2	중부			242183.931	281077.766	31.666	127 53 08.4920	34 46 20.031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3	중부			242321.979	281031.191	28.415	127 53 06.7084	34 46 24.523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4	중부			242401.948	280981.77	34.639	127 53 04.7928	34 46 27.132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5	중부			242561.506	281038.782	43.963	127 53 07.0900	34 46 32.29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6	중부			242849.246	281176.689	57.673	127 53 12.6129	34 46 41.590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7	중부			242782.17	281246.81	56.3	127 53 15.3471	34 46 39.393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8	중부			242597.887	281259.347	51.512	127 53 15.7761	34 46 33.410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39	중부			242481.445	281220.119	46.485	127 53 14.1930	34 46 29.643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제질	측량상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5040	중부			242339.99	280758.812	20.976	127 52 56.0040	34 46 25.185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1	중부			242420.264	280615.181	19.42	127 52 50.3837	34 46 27.831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2	중부			242485.477	280413.781	17.62	127 52 42.4864	34 46 30.004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3	중부			242370.294	280119.836	9.751	127 52 30.8879	34 46 26.350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4	중부			242271.759	279996.785	10.551	127 52 26.0155	34 46 23.188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5	중부			242384.231	279758.451	10.808	127 52 16.6819	34 46 26.904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6	중부			242608.959	279889.693	6.622	127 52 21.9195	34 46 34.159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7	중부			242632.371	279719.945	4.881	127 52 15.2523	34 46 34.967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8	중부			242718.24	279730.206	6.726	127 52 15.6851	34 46 37.750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49	중부			242727.476	279525.023	4.696	127 52 07.6195	34 46 38.107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0	중부			242494.876	279941.211	6.652	127 52 23.9064	34 46 30.443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1	중부			242469.285	279470.225	4.35	127 52 05.3768	34 46 29.745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2	중부			242668.002	279431.227	1.739	127 52 03.9108	34 46 36.204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3	중부			242270.279	279185.565	7.588	127 51 54.1155	34 46 23.368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4	중부			242260.926	278991.083	2.46	127 51 46.4648	34 46 23.118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5	중부			242446.335	279185.236	2.158	127 51 54.1622	34 46 29.080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6	중부			242583.73	279138.077	1.73	127 51 52.3542	34 46 33.551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7	중부			242742.72	279056.404	4.35	127 51 49.1963	34 46 38.733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8	중부			242624.596	279261.261	4.531	127 51 57.2122	34 46 34.843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59	중부			242501.467	279303.177	3.843	127 51 58.8188	34 46 30.836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5060	중부			242327.494	279376.408	8.9	127 52 01.6394	34 46 25.171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6033	중부			246067.794	278590.429	32.246	127 51 31.9904	34 48 26.752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6	중부			255935.161	280425.275	18.001	127 52 47.5782	34 53 46.401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7	중부			256032.496	280602.124	21.054	127 52 54.5765	34 53 49.509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8	중부			255496.667	280788.514	22.161	127 53 01.7307	34 53 32.069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69	중부			255370.013	280892.8	18.531	127 53 05.7933	34 53 27.930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0	중부			255209.884	280854.372	15.819	127 53 04.2244	34 53 22.746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1	중부			254970.528	280975.951	24.99	127 53 08.9285	34 53 14.944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2	중부			255270.971	281262.687	25.753	127 53 20.3243	34 53 24.610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3	중부			252755.667	280658.469	35.492	127 52 55.6591	34 52 03.171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4	중부			252826.242	280677.7	38.661	127 52 56.4407	34 52 05.455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5	중부			252909.416	280721.105	44.71	127 52 58.1783	34 52 08.141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계질	측량상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7076	중부			252716.307	280937.404	29.171	127 53 06.6264	34 52 01.8141	2020.11.25.	맨홀식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7	중부			252792.723	281032.931	29.547	127 53 10.4137	34 52 04.266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8	중부			252799.278	281130.638	25.823	127 53 14.2625	34 52 04.450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79	중부			252693.527	281124.398	23.975	127 53 13.9800	34 52 01.021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80	중부			252691.282	281356.424	19.804	127 53 23.1134	34 52 00.881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81	중부			252726.418	281503.796	15.234	127 53 28.9273	34 52 01.979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82	중부			252518.339	281566.141	15.022	127 53 31.3087	34 51 55.209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7083	중부			252384.646	281675.829	15.725	127 53 35.5799	34 51 50.840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0	중부			255064.7	281383.99	17.274	127 53 25.0288	34 53 17.883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1	중부			254977.675	281490.641	14.032	127 53 29.1980	34 53 15.028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2	중부			254860.275	281612.604	12.38	127 53 33.9593	34 53 11.184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3	중부			255144.406	281625.898	14.317	127 53 34.5825	34 53 20.399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4	중부			254977.789	282166.308	8.061	127 53 55.8037	34 53 14.836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5	중부			254821.001	282081.625	9.086	127 53 52.4138	34 53 09.773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6	중부			254683.088	281963.277	4.07	127 53 47.7051	34 53 05.333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7	중부			254584.029	282113.464	1.496	127 53 53.5838	34 53 02.075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8	중부			254548.825	282015.711	1.832	127 53 49.7224	34 53 00.961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29	중부			254505.918	281916.647	2.481	127 53 45.8066	34 52 59.598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0	중부			255114.446	282378.635	16.759	127 54 04.2128	34 53 19.208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1	중부			254984.397	282460.684	7.818	127 54 07.3976	34 53 14.964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2	중부			254953.946	282545.736	5.338	127 54 10.7359	34 53 13.952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3	중부			254965.825	282662.164	3.972	127 54 15.3246	34 53 14.303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4	중부			254729.681	282671.828	2.76	127 54 15.6212	34 53 06.638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5	중부			256553.041	284123.018	3.279	127 55 13.4225	34 54 05.370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6	중부			256503.24	284077.042	4.286	127 55 11.5938	34 54 03.768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7	중부			256434.46	283932.739	15.974	127 55 05.8859	34 54 01.579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8	중부			256534.983	283943.383	12.768	127 55 06.3414	34 54 04.838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39	중부			256651.826	283830.708	23.302	127 55 01.9460	34 54 08.663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0	중부			256754.369	283918.083	23.71	127 55 05.4242	34 54 11.964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1	중부			256766.305	283995.818	21.35	127 55 08.4901	34 54 12.328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2	중부			256669.016	284086.027	5.82	127 55 12.0076	34 54 09.144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3	중부			257834.451	283848.399	53.287	127 55 03.0696	34 54 47.029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측지계		세계측지계		표고	경도	위도	설치일	표지계질	측량상과 보관장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8044	중부			257790.197	283725.005	69.163	127 54 58.1933	34 54 45.630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5	중부			257798.146	283615.681	82.721	127 54 53.8901	34 54 45.920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6	중부			257893.694	283697.389	69.404	127 54 57.1428	34 54 48.996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7	중부			257905.943	283749.196	65.877	127 54 59.1879	34 54 49.378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8	중부			257857.535	283787.843	63.913	127 55 00.6927	34 54 47.796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49	중부			257943.892	283845.855	52.438	127 55 03.0089	34 54 50.581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50	중부			257938.006	284006.697	37.254	127 55 09.3422	34 54 50.3421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51	중부			257815.023	284142.888	29.367	127 55 14.6622	34 54 46.311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8052	중부			257844.911	283876.801	53.127	127 55 04.1921	34 54 47.360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0	중부			250586.555	294106.634	1.808	128 01 44.1891	34 50 48.632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1	중부			250673.943	294278.479	1.615	128 01 50.9876	34 50 51.410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2	중부			250515.855	294277.816	0.684	128 01 50.8976	34 50 46.281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3	중부			250273.994	294658.143	2.331	128 02 05.7673	34 50 38.307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4	중부			250333.388	294665.907	3.073	128 02 06.0970	34 50 40.231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5	중부			250405.865	294779.505	6.3	128 02 10.5971	34 50 42.545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6	중부			250311.694	294866.906	7.683	128 02 13.9984	34 50 39.460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7	중부			250511.083	296128.159	24.335	128 03 03.7167	34 50 45.5036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8	중부			250545.347	296045.621	23.608	128 03 00.4826	34 50 46.643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099	중부			250553.315	295952.453	26.176	128 02 56.8192	34 50 46.933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0	중부			250665.303	295966.271	19.261	128 02 57.4091	34 50 50.562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1	중부			250704.395	296062.367	15.258	128 03 01.2072	34 50 51.797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2	중부			250858.387	296127.861	9.261	128 03 03.8483	34 50 56.772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3	중부			250806.674	294749.237	33.02	128 02 09.5689	34 50 55.559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4	중부			251948.012	293824.759	5.382	128 01 33.6441	34 51 32.8993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5	중부			252657.263	294001.479	4.025	128 01 40.8864	34 51 55.852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6	중부			252740.669	293928.318	4.542	128 01 38.0401	34 51 58.5828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7	중부			252855.371	294035.095	12.424	128 01 42.2898	34 52 02.2689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8	중부			252795.637	295135.571	39.111	128 02 25.5863	34 51 59.9622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09	중부			253096.906	295138.265	18.456	128 02 25.8155	34 52 09.7360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10	중부			253129.258	295503.45	24.114	128 02 40.2048	34 52 10.6624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11	중부			253174.662	295772.285	29.398	128 02 50.8066	34 52 12.0445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도근점	19112	중부			253285.608	295976.897	35.626	128 02 58.9073	34 52 15.5747	2020.11.25.	철재	남해군청	신규

기준점 명칭	번호	원점	지역축지계		세계축지계		경도	위도	설계일	표지세질	측량방법 모간공소	비고
			중선	횡선	중선	횡선						
도근점	19113	중부			252951.992	295329.991	128 02 52.9866	34 52 04.9004	2020.11.25	황해	남해군공	신굴
도근점	19114	중부			252081.272	296004.257	128 02 59.8184	34 52 02.5116	2020.11.25	황해	남해군공	신굴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0 - 1412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는 사용허가 규정을 상위 법률에 합치되도록 장사시설 사용을 신고제로 개정하고,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법에 맞추어 30년으로 바꾸고, 사용료와 관리비를 개정하여 조례를 재정비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사용신고로 개정(제3조).
 - 1) 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 → 장사시설 사용 신고로 개정
 -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신고사항으로 개정

나.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개정(제4조, 별표 3)

- 1) 장사시설 사용기간 60년을 법에 맞추어 30년으로 개장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별표 3
- 2)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비 개정 : 별표 3

다. 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 재정비(제5조)

-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범위 : 별표 4로 명확히 규정
- 2)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및 불법체류 외국인을 감면대상자로 추가하여 재정비

라. 장사시설 지도감독 및 위탁 취소 규정 신설(제17조, 제18조)

- 1) 장사시설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
- 2) 장사시설 관리 운영 위탁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위탁의 취소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0년 12월 16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852, 팩스 055-860-3882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장사행정팀(전화 055-860-38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등) ① 군 공설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2. 창선공익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부대로 2487번길 15

② 장사시설의 세부 명칭과 사용 토지는 별표 1과 같고, 사용기준과 사용대상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를 작성하여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관리비 이외의 석물 등 연고자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별표 4에 따른 사람
- 3.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4.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는 무의탁사망자 또는 불법체류 외국인
-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장사시설이 있는 서면 연축리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연고자나 사전사용 신고한 사람이 사용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하거나 사전사용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 1. 사용기간 1년 이내 : 100분의 50 반환
- 2. 사용기간 1년 초과 2년 이내 : 100분의 40 반환
- 3. 사용기간 2년 초과 3년 이내 : 100분의 30 반환
- 4. 사용기간 3년 초과 4년 이내 : 100분의 20 반환
- 5. 사용기간 4년 초과 5년 이내 : 100분의 10 반환
- 6. 사용기간 5년 초과 : 반환하지 않음

② 제1항의 사유로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연할 계산하여 남은 관리비를 반환한다.

제7조(사용기간) ①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년 이내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고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 신고한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 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장사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

- 1.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2. 연고자의 요구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거나 유골 등을 반환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장사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9조(사용신고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군 관할 구역 밖에서 각종 개발행위 등의 사유로 발굴된 무연분묘의 개장유골인 경우
- 2. 군 관할 구역 밖의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적출물 등의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변경신고)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연고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 2. 사망,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하거나, 연고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유골 반환 신청 등) 연고자가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거 및 개장 등)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 신고를 취소하였거나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연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연고자가 유골의 수거 또는 개장을 하지 않아 무연분묘로 간주되거나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년이 지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당에 안치한 후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장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고자가 부담한다.

제13조(시설설치 등) ① 분묘 등의 점유면적 및 시설설치 기준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며, 세부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자연장지의 사용방법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며,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 봉안평장으로 안치하는 유골함은 목재 등 부식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 유골함에 넣어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안치할 수 있으며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⑤ 장사시설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은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시에 시설을 변경하여 함께 안치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등)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군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사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 1. 수탁자가 제1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3. 수탁자가 관리·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연고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장사시설의 사용료(관리비는 제외한다)와 장사시설 중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장사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장사시설의 명칭 및 사용 토지(제2조제2항 관련)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 분	명 칭	사용 토지
공익장례식장	남해추모누리장례식장	남해군 서면 연죽리 961-1번지 일원
매장·봉안평장 묘역	유자·치자·비자·동백·개나리	남해군 서면 연죽리 산 8, 산 13-1, 893, 961-1, 963번지 일원
봉안시설(봉안당)	안 락 원	
화장시설 및 장례식장	영 화 원	
산골시설	유택동산	
자연장지	추모정원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산 137번지 일원

비고

1. “매장묘역” 이란 분묘의 형태로 시신 및 유골을 매장하기 위하여 조성된 묘지를 말한다.
2. “봉안평장 묘역”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지정된 장소에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로 묻어 봉분 없이 평탄하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산골시설” 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군수가 지정하는 특정한 장소에 뿌려서 장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창선공익장례식장

구 분	명 칭	사용 토지
공익장례식장	창선장례식장	남해군 창선면 동대리 464번지 일원

[별표 2]

장사시설의 사용구분(제2조 관련)

1.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장사시설명	기 준	면적 및 안치기수 등	사용자
매 장 묘 역	분묘 1기당	10㎡ (합장 15㎡)	군민
봉안평장 묘역	1구당	1.35㎡	군민
봉안당(안락원)	유골1구당	1개 안치단	군민 또는 타지역민
봉안담	가족형 1개소	12기 안치	군민
	문중형(소)1개소	24기 안치	군민
	문중형(대)1개소	48기 안치	군민
봉 안 묘	1개소당	30㎡	군민
자 연 장 지	1구당	0.25㎡	군민 또는 타지역민
산 골 시 설	유골 산골		군민 또는 타지역민

비고

1. “군민”이란 사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사시설의 사용은 신청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정한다.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제4조제1항 관련)

1. 매장묘지 및 봉안시설 등

시설구분	사용료(30년)	관리비(1년)	사용(연장)기간	비고
매장묘지	860,000	2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평장	130,000	5,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당	160,000	10,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봉안묘	3,120,000	6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가족형 12기)	3,950,000	12,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24기)	7,900,000	2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봉안담 (문중형 48기)	15,800,000	30,000	30년(1회)	군민만 사용
자연장 1구	300,000	2,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2구	550,000	3,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4구	1,100,000	5,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자연장 6구	1,650,000	7,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문중·종중 (48기 이하)	기당/275,000	15,000	30년(1회)	타지역민 3배

비고

1. 묘지 또는 봉안된 유골의 현존지가 군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와 주소지 또는 등 록기준지가 타 시군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봉안당과 자연장에만 안치할 수 있 으며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사용료와 관리비는 30년 단위로 징수하되, 사설묘지 설치 허가를 위해 임시로 봉 안당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1년마다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3. 석물 등 시설물의 설치에 장사시설의 연고자가 부담한다.

2. 화장장 및 장례식장

구분	내용	사용료(원)		비고
		군민	타지역민	
화장장	대인 (만15세 이상)	60,000	500,000	
	소인 (만15세 미만)	40,000	300,000	
	사산아	30,000	200,000	
	개장유골	40,000	200,000	
	기타 적출물(kg당)	4,000	4,000	
장례식장	영결식장	무료	100,000	
	빈소 및 접객실 (시간당)	특실 : 15,000원 이하 일반실 : 10,000원 이하		
	안치실 (시간당)	6,000원 이하		
	염습실 (회당)	50,000원 이하		

비고

1. 빈소 및 접객실, 안치실의 사용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별표 4]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5조제1항 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별표 5]

분묘 등의 시설물 설치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분묘의 규격 및 형태

묘역별	규격(cm)	비고
석물 설치 묘역	가로110 × 세로220 × 높이 50(둘레석)	잔디 높이 30cm (둘레석 윗봉분)
석물 없는 묘역	가로110 × 세로220 × 높이(지면에서)20	
봉안평장묘역	가로 90 × 세로150	
봉안묘역	가로470 × 세로630	

2. 묘비 등의 규격

구분		규격(cm)
비석	입비	가로25 × 세로(높이)75 × 두께12
	와비	가로50×세로35×높이(지상:전면5×후면10,지하:5)
	입비의좌대	가로40 × 세로25 × 높이20
	봉안평장와비	가로40 × 세로30 × 전면높이7, 후면높이15
둘레석	전·후면(상·하단)	가로110 × 세로21 × 두께9
	양 측면(상·하단)	가로178 × 세로21 × 두께9
	중단(전·후면)	가로76 × 세로32 × 두께5
	중단(양 측면)	가로175 × 세로32 × 두께5
	사각기둥	가로21 × 세로15 × 높이32
상석	상석	가로60 × 세로45 × 두께15
	좌대	가로60 × 세로45 × 두께6
	밑복석	가로15 × 세로15 × 지름15
	뒷대석	가로60 × 세로15 × 높이12

[별표 6]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제13조제2항 관련)

1.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 가. 고인표시는 가로20cm×세로10cm×높이20cm 이내의 검정색 재질의 석물을 설치할 수 있다.
- 나. 유골함의 용적은 가로 20cm x 세로 20cm x 높이 20cm 이내이어야 한다.
- 다. 가목에 따라 고인의 표시를 할 경우 석물이 지면으로 부터 3cm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연장지 내에서의 행위 제한

- 가. 정해진 장소 외에서의 제사 행위
- 나. 제단, 비석 등 추모시설의 설치
- 다. 취사, 소풍, 야영, 행사, 촛불을 피우는 행위 등
- 라. 자연장지를 고의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 마.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 바. 상업적인 물품이나 인쇄물을 판매, 제공하는 행위
- 사. 그 밖에 자연장지 운영·관리에 방해가 되는 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서

사망자 (사전사용자)	성명 (사전사용)	성별	생년월일 (사전사용)
	주소 (등록기준지)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신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시설	장사시설 구분		사용기간 및 안치번호
	매장묘역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평장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당 (안락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자연장지 (추모정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화장시설		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사망자 (사전사용자)	성명 (사전사용)	성별	생년월일 (사전사용)
	주소 (등록기준지)	사망장소	
	사망년월일	사망원인	

신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사용 (기간연장) 시설	장사시설 구분		사용기간 및 장지			
	매장묘역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평장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당 (안락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담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봉안묘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자연장지 (추모정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년간)				
	장지					
화장시설		년 월 일 시 분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남해추모누리 연고자 변경 신고서

사용시설	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장묘역 <input type="checkbox"/> 봉안평장 <input type="checkbox"/> 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봉안담 <input type="checkbox"/> 봉안묘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지		
	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번호	연고자 성명		
당초 연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변경 연고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사항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유골 반환 신청 및 인수증

사용시설	명칭	남해공설공원묘원 추모누리		
	구분	<input type="checkbox"/> 매장묘역 <input type="checkbox"/> 봉안평장 <input type="checkbox"/> 봉안당 <input type="checkbox"/> 봉안담 <input type="checkbox"/> 봉안묘 <input type="checkbox"/> 자연장지		
	소재지	남해군 서면 연죽로 46-77 일원		
	번호	규모	기	

사망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원인

연고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망자와의 관계

신청사항	사용허가년월일
	관리비납부조건
	유골반환사유
	연고자와의 관계
	관계공무원 확인

「남해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의 반환을 신청하고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신청 및 인수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0 - 1417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7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KT사천지점	주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역사길
소하천명		정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이동면 무림리 1802번지 일원		
	면적	3.3㎡ (일시점용 7.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1. 27. ~ 2025. 11. 26.		
	목적 및 사유	통신관 매설		

남해군 공고 제2020 - 1428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남해군수(건설교통과장)	주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소하천명	봉성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남해읍 평현리 2257번지		
	면적	350㎡(영구점용 98㎡, 임시점용 25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2. 1. ~ 영구점용(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개월)		
	목적 및 사유	공작물의 설치(저류시설 설치)		

남해군 공고 제2020 - 142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김이*, 박권*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소하천명		개린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749번지(146-107, 146-108 인근)		
	면적	1㎡, 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2. 1. ~ 2025. 11. 30.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배수관로		

남해군 공고 제2020 - 1441호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남해군 서면 「염해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남 해 군 수

- 1. 사업명칭 : 서면 염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 2.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521필/232,843.3㎡
- 4. 지적확정조서 : 붙임(1)
- 5. 공람기간 : 2020. 11. 30. ~ 12. 15(공고일로부터 15일간)
- 6. 공람장소 :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
-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 8. 문의처 : 남해군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1)

남해군 공고 제2020 - 1459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2. 개정이유

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어가는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추진하기 위함

나. 지족2마을과 지족3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사항으로 지족2마을과 지족3마을의 병합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이장 정수 조정 : 삼동면 23명 → 22명(감 1명, 전체 222명 → 221명)

나.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삼동면	영지리	5	영지, 시문, 수곡, 고암, 갈현
	지족리	3	지족1, 지족2, 지족3
	금송리	3	금송, 전도, 둔촌
	동천리	5	화천, 동천, 금천, 양화금, 내동천
	봉화리	4	삼화, 봉화, 화암, 내산
	물건리	3	물건, 은점, 대지포
	소 계	23	



읍면별	리명	정원	관할구역
삼동면	영지리	5	영지, 시문, 수곡, 고암, 갈현
	지족리	2	지족1, 지족
	금송리	3	금송, 전도, 둔촌
	동천리	5	화천, 동천, 금천, 양화금, 내동천
	봉화리	4	삼화, 봉화, 화암, 내산
	물건리	3	물건, 은점, 대지포
	소 계	22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 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삼동면의 지족리의 정원란 “3” 을 “2” 로 하고, 같은 표 삼동면의 지족리의 관할구역란 중 “지족2, 지족3” 을 “지족” 으로 하며, 같은 표 삼동면의 소계의 정원란 중 “23” 을 “22” 로 하고, 같은 표 계의 정원란 “222” 를 “221”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460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반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어가는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추진하기 위함

나. 지족2마을과 지족3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사항으로 지족2마을과 지족3마을의 병합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반 수 조정 : 지족2 4개, 지족 3 8개 → 지족 12개(증감 없음)

나. 별표 남해군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삼동면	지 족	지 족1	1	지족1	"	
		지 족2	4	1-4	"	
		지 족3	8	1-8	"	
		계	58			

↓

읍면별	법정리별	행정리별	반 수	반 명	구 역	비 고
삼동면	지 족	지 족1	1	지족1	"	
		지 족	12	1-12	"	
		계	58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삼동면의 지족의 행정리별란 중 “지 족2” 를 “지 족” 으로 하고, 같은 표 삼동면의 지족의 지 족2의 반수란 “4” 를 “12” 로 하며, 같은 표 삼동면의 지족의 지 족2의 반명란 “1-4” 를 “1-12” 로 하고, 같은 표 삼동면의 지족의 지 족3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461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되어가는 상황에서 마을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 추진하기 위함
- 나. 지족2마을과 지족3마을 주민들의 건의에 따른 사항으로 지족2마을과 지족3마을의 병합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리 수 조정 : 삼동면 23 → 22 (감1, 총계222 → 221)
- 나. 별표 이동 명칭 및 관할구역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2425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서변리 24-1번지) 남해군청 행정과(전화 860-3115, 팩스 860-3737)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행정팀(860-3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읍면명의 삼 동 면 23란 중 “23” 을 “22” 로 하고, 같은 표 읍면명의 계의 구역란 중 “222” 를 “221”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0 - 146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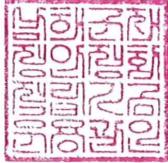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3일

남 해 군 수

- 1. 사용 및 폐기 개시일 : 2020. 12. 3.
- 2. 사유
 -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및 기존 기금 변경·폐지에 따라 공인 폐기 및 새로 제작 등록
- 3. 등록, 폐기 공인명·인영
 - 가. 폐기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재정안정화 적립기금운용관인	2.0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기획예산 담당관
남해군재정안정화 적립기금출납원인	1.8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폐기		기획예산 담당관

나. 등록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남해군통합재정안 정화기금운용관인	2.0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인 보		기획예산 담당관
남해군통합재정안 정화기금출납원인	1.8cm정사각형 한글전서체	인 보		기획예산 담당관

끝.

남해군 공고 제2020 - 1469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장	주소	진주시 남강로 ***
	소하천명	회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남해군 서면 중현리 1574번지, 노구리 1418번지		
	면적	60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0. 12. 4. ~ 영구(임시 점용 : ~ 2022. 4. 30.)		
	목적 및 사유	국도77호선 중현지구 위험도로 개선공사		